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06

발의연월일: 2022. 6. 16.

발 의 자: 송언석・권성동・金炳旭

김상훈 • 류성걸 • 양금희

윤재옥 • 조수진 • 최춘식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10만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며, 보육 관련비과세 한도 역시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으며, 근로자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과 라면은 각각 2.24배와 2.14배, 자장면 1.89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함.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근로 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상 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하고,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머목).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 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 및 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사 또는 식사대와 보육 관련 급여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사 또는 식사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
	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
	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머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u>10만원</u>	<u>20</u> 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